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5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윤후덕 · 김성범 · 임미애
한정애 · 서영석 · 이광재
홍기원 · 어기구 · 전진숙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

는 것임(안 제111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 환급 한도액”을 “연간 환급 한도액은 40만원으로 하며 산정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50원”을 “3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 ----- ----- ----- ----- ----- ----- ----- ----- ----- <u>2029년 12월 31일</u> ----- ----- ----- ----- ----- ----- ----- ----- ----- ----- -----.

1. 2. 삭 제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u>연간 환급 한도액</u>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u>250원</u>의 개별소비세 2. (생 략) ④ ~ ⑫ (생 략)	③ ----- -----, <u>연간 환급 한도액은 40만원으로 하며 산정기준</u> ----- -----. 1. ----- ----- ----- --- <u>300원</u>----- 2. (현행과 같음) ④ ~ ⑫ (현행과 같음)
--	---